

서울특별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500
- 발 의 자 : 김기덕 의원 외 12명
- 발 의 일 : 2019년 3월 27일
- 회 부 일 : 2019년 3월 29일

2. 제안이유

- 군복무 중인 서울특별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행복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군복무 서울청년 상해보험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군복무 서울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군복무 서울청년 상해보험 계약 체결 시 고려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군복무 서울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을 정함(안 제5조).

마. 매년 군복무 서울청년 상해보험에 대한 정책효과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토록 함(안 제6조).

바. 군복무 서울청년 상해보험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군인복지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제4조(보험계약체결)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서울특별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나. 전제

-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
- 서울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대상자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상해보험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5,000만원 보장 등 추계기간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5년

라. 방법

- 서울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대상자는 경기도 사례를 준용하여 59,900명으로 가정
 - 2018년 서울시 20~24세 남자인구수 323,758명에 군복무자 비율 18.5% 적용
- 서울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단가는 경기도 사례를 준용하여 29,800원으로 가정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8,925,100천원(5년간)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계
구분	-	-	-	-	-	-	-
	소계(a)	-	-	-	-	-	-
세입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1,785,020	1,785,020	1,785,020	1,785,020	1,785,020	8,925,100
	소계(b)	1,785,020	1,785,020	1,785,020	1,785,020	1,785,020	8,925,100
□ 총 비용(b-a)		1,785,020	1,785,020	1,785,020	1,785,020	1,785,020	8,925,100

다. 입법예고(2019. 4. 3. ~ 4. 10.)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군복무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은 청년 상해보험의 정의, 가입대상, 사무의 위탁,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서울특별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 “서울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함.
제3조(시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서울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제4조(보험계약체결)	- 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제5조(가입대상)	- 서울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제6조(평가)	- 시장은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또는 가입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제7조(사무의 위탁)	-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청년 상해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나 관련 전문기관 등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음.
제8조(준용)	- 서울청년 상해보험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제9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시장은 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정부부처, 자치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제11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함.
부칙	- 공포일부터 시행

-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군복무 중인 청년의 수는 비공개되어 있어 청년청은 서울특별시 20~24세 남자 인구수 323,758명에 군복무자 비율 18.5%를 적용하여 59,900명으로 추산하고 있음.
- 비용 추계를 살펴보면, 상해보험 단가는 경기도 사례를 준용하여 29,800원으로 산정하여 5년간의 소요 비용을 89억 2천 5백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비용 추계〉						
○ 총 비용 ≍ 8,925,100천원(5년간)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세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1,785,020	1,785,020	1,785,020	1,785,020	1,785,020	8,925,100
	소계(b)	1,785,020	1,785,020	1,785,020	1,785,020	1,785,020	8,925,100
□ 총 비용(b-a)		1,785,020	1,785,020	1,785,020	1,785,020	1,785,020	8,925,100

- 청년청은 동 조례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역의 사례 등을 검토해 볼 때, 보험료 지급 예산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30%로, 실제 혜택이 낮으므로 사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2018년 성남시 사례 (동 사업은 성남시가 최초 도입한 사업임)

- 2018년 예산 2억 2천만만원 (성남시민 중 군복무 중인 6,195명 대상)
- 2018.12.31. 기준, 116건 보험금 지급 (상해 75건, 질병 41건)
- 6천 6백만원 보험금 지급 (예산대비 30% 보험금 혜택)

⇒ 단체보험 가입 예산(2억 2천만원) 대비 실제 보험금(6천 6백만원) 지급액이 낮은 편임.

⇒ 향후 사업 추진 시, 군복무 청년에 대해 상해질병 병원비(실비) 또는 위로금 지급 사업으로 전환도 고려 가능(청년청 의견)

※ 2019년 경기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예산 24억 9천 9백만원 (5개 보험사 단체보험 가입 보험금, 민간이전)

- 청년청은 동 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 1)상 협의 대상 사업에 해당될 수 있는바,

1)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2019년 5월 25일, 공문 발송)

- ※ 다만, 유사 사례인 성남시 사례에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는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빈려한다”며 “성남시가 자체 판단해 시행하라”는 답변을 받은바 있음(성남시보도자료, 2018년 2월 1일)
- 본 제정안은 서울시 군복무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헌법」 제39조의 국민의 의무²⁾인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고 규정하면서 “국방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명시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2)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 군복무와 관련한 법령으로 「병역법」, 「군인복지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수십 개의 법령이 있고, 국방과 관련하여 법률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며,
-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군복무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제도를 이미 실시하여 국가에서 선점하고 있는 정책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와 더불어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국방부 군 복지 정책〉

- 장병 복무여건 개선
 - 軍의료시스템 개편으로 민간 수준의 진료 기회 제공
 - * 소방청(119 응급구조 등)과 협력을 통해 응급환자 처치 및 후송능력 강화
 - *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보조행위 근절을 위해 의무인력 총원(1,104명)
 - * 국군외상센터 운영 준비 및 국군수도병원 보강
- ※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 16쪽
- 병 무료 나라사랑카드 병 상해보험(군인공제회)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의무복무 대상자에게 발행하는 신용·체크카드인 나라사랑카드 발급 시 자동 가입되는 상해보험으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

구분	내용
대상	나라사랑카드를 소지한 현역병사(의무경찰 포함)
기간	입영일부터 전역일 24:00까지 보험 적용
가입조건	나라사랑카드(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발급 후 현역 복무 시 자동 가입
비용	단체보험 계약 형태로 무료 가입(금융기관 부담)
보상조건	<p>임무수행을 제외한 영외 체류시 발생하는 상해 사고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3%~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상해사고 : 최대 5,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 최대 1억원 추가 <p>※ 보상조건 : (영외)는 임무수행 중인 영외체류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는 포함되지 않으며, 부대장 승인이 있는 '외출, 외박, 휴가 등'이 해당</p>
	<p>영내·외 화재, 폭발, 붕괴 등에 의해 발생하는 상해 사고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3%~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5,000만원 (추가) <p>※ 보상조건 : (영내·외)는 영내,외 임무수행 중이거나, 휴가 중이더라도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 시에는 모두 해당</p>

전우사랑 위로금

개요

군 복무 중 질병 및 상해 등으로 불의의 사고로 사망시 위로금 1억원 지급

지급 대상 : 병사(상근예비역 포함), 생도 및 간부후보생

* 자해사망자는 제외되나 18. 1. 1일 이후 자해사망자 중 순직처리된 자 포함 시행

지급절차 / 연락처

- 각 부대 인사과 → 사단 인사처 → 각 군 복지정책과 / 국방부
- 영로금 지급에 관한 서류는 각 부대에서 작성
- 문의 : 전우사랑위로금 제도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1
전우사랑위로금 집행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22

병 무료 상해보험(나라사랑카드 서비스)

개요

- 대상 / 가입절차 :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한 현역병 / 자동가입
- 보험기간 : 현역입대일 ~ 전역일 24:00
- 기간 중 나라사랑카드 해지시에는 보험이 해지되므로 유의

보험혜택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외 체류 중 상해사고 : 최대 5천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시 최대 1억원 추가(최대 1억5천만원 지급) ◦ 영내·외 화재, 폭발, 붕괴 : 최대 5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외 체류 중 상해사고 : 최대 1천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시 최대 5천만원 추가(최대 6천만원 지급) ◦ 영내·외 화재, 폭발, 붕괴 : 최대 5천만원 (18. 2월 적용 예정)

* 경미한 상해사고와 일·통원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음.

*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의 나라사랑카드를 2개 모두 발급받을 수 있으며, 2개 은행에서 모두 보험금 지급이 가능함. 따라서, 가능한 2개 카드 모두 발급을 받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며, 카드발급 수수료가 없음.

※ 2018 병 복지 갈라잡이(국방부)

분 야	현 행 (2018)	달라지는 사항 (2019)
장병인권존중의 복무여건 개선	▶ 軍 의료서비스 개선 - 공상 병사 전역 후 6개월까지 치료비 지원 (6개월만 전역보류) - 무자격자 의료보조행위 잔존	▶ 軍 의료서비스 개선 - 공상 병사 임치 시까지 치료비 지원 (임치 시까지 전역보류) - 무자격자 의료보조행위 근절 - 의무군무원 886명 채용
	▶ 軍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 군사명사고진상규명위원회 발족(9월) - 수사권 : 사고부대 헌병대	▶ 軍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 軍 내 사망사고 발생시 국선변호인 지원 - 수사권 : 국방부 또는 각 軍 본부
장병복지 및 처우 개선	▶ 병 휴가·전역여비 - 숙박비 : 18,000원 - 선박비(50해리 이상) : 31,600원	▶ 병 휴가·전역여비 인상 - 숙박비 : 25,000원 - 선박비(50해리 이상) : 41,080원
	▶ 유급지원병 보수 (유형 1 기준) - 月 : 182만 원	▶ 유급지원병 보수 인상 (유형 1 기준) - 月 : 245만 원 (+63만 원)
	▶ 당직근무비 - 평일 5천 원, 주말 1만 원	▶ 당직근무비 인상 - 평일 1만 원, 주말 2만 원
	▶ 병사 피복 보급 기준 - 춘추운동복 (1벌) - 동계 점퍼 미보급, 아전상으로 대체 활용 中	▶ 병사 선호 피복류 보급 확대 - 춘추운동복 (2벌) - 육군 전방부대, 해군·해병대 서복도서 부대, 공군 방공·관제부대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 (70억 원)
	▶ 공기청정기 보급 - 육군훈련소 생활관 내 보급 (1,400대 / 4.3억 원)	▶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 - 全 병영생활관 보급 (367억 원)
	▶ 급식 혁신 시범사업 시행 - △주말 브런치 (연 1회), △병사식당 외 급식 (연 1-2회), △복수·자율메뉴 편성 등	▶ 급식 혁신사업 전군 확대시행 - △주말 브런치 (연 2회), △병사식당 외 급식 (연 4회), △복수·자율메뉴 편성 등 - 부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 동원훈련 보상비 (1.6만원)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3.2만원)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 여군 비중 확대 - 6.2% (11,400명) - 초임획득 : 1,537명	▶ 여군 비중 확대 (지속) - 6.7% (12,495명) (+1,095명) - 초임획득 : 1,832명 (+295명)
	▶ 軍 어린이집 (133개소)	▶ 軍 어린이집 확충 (137개소)

붙임#1-2-2

※ 2019 병 복지 길라잡이(국방부)

○ 특히, 군복무는 서울시 청년들에게만 한정되는 사업이 아닌바,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상해보험제도를 도입³⁾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좀 더 강화된 보험제도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한편, 국방의 의무 이행 중 상해 및 질병 발생시에는 군병원에 진료, 입원 등 자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바, 민간병원 진료를 위하여 상해보험 제도를 실시하는 것보다 군병원의 획기적인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과 국방부 병 무료 상해보험 비교〉

구 분	경기도	국방부																		
대 상	경기도 거주 청년 중 군복무 중인 자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의무복무 대상자																		
절 차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 시 상해보험 자동 가입	의무복무 대상자에게 발행하는 신용·체크카드인 나라사랑카드 발급 시 자동 가입																		
비 용	무료 가입(경기도 부담)	무료 가입(국가 부담)																		
보험금 지급 기준	<p>▶ 경기도 거주 청년 대상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후유장애·사망 시 보험금 지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보험금 수령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상해사망 시</td> <td>5천만원</td> <td></td> </tr> <tr> <td>상해 후유장애 시</td> <td>5천만원</td> <td></td> </tr> <tr> <td>질병 사망 시</td> <td>5천만원</td> <td></td> </tr> <tr> <td>골절 및 화상 발생 시</td> <td>30만원</td> <td>1회당</td> </tr> <tr> <td>입원 시</td> <td>3만원</td> <td>1일당</td> </tr> </tbody> </table> <p>▶ 타 보험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 없이 중복보상</p>	구 분	보험금 수령액	비고	상해사망 시	5천만원		상해 후유장애 시	5천만원		질병 사망 시	5천만원		골절 및 화상 발생 시	30만원	1회당	입원 시	3만원	1일당	<p>영외 임무수행을 제외한 영외 체류시 발생하는 상해 사고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3%~100%)</p> <p>▶ 일반 상해사고 : 최대 5,000만원</p> <p>▶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 최대 1억원 추가</p> <p>※ 보상조건 : (영외)는 임무수행 중인 영외체류 중 발생하는 상해 사고는 포함되지 않으며, 부대장 승인이 있는 '외출, 외박, 휴가 등'이 해당</p> <p>영내·외 화재, 폭발, 붕괴 등에 의해 발생하는 상해 사고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3%~100%)</p> <p>▶ 최대 5,000만원 (추가)</p>
구 분	보험금 수령액	비고																		
상해사망 시	5천만원																			
상해 후유장애 시	5천만원																			
질병 사망 시	5천만원																			
골절 및 화상 발생 시	30만원	1회당																		
입원 시	3만원	1일당																		

3) 2018. 2. 1. 경기도 성남시에서 최초로 군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한 이후, 2018. 11. 1.부터 경기도 전체로 확대 시행

		※ 보상조건 : (영내·외)는 영내, 외 임무수행 중이거나, 휴가 중 이더라도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 시에는 모두 해당
--	--	--

- 둘째, 서울특별시의 2019회계연도 재정자립도는 80.11%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면 높은 편이나, 서울특별시의 사회보장예산 비율은 2017년도 33.6%, 2018년도 34.1%, 2019년도 36.8%로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으로,
 - 사회보장예산의 지속적인 증대가 건전재정 및 재정 효율성 차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단위: %, 백만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80.11	80.87	24,168,334	8,881,568	36.8

※ 출처 : 2019년 서울특별시 예산기준 재정공시(2019. 2.),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나. 세부 내용 검토

1)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안 제1조~안제4조, 안 제6조)

- 안 제1조는 군복무 중인 서울특별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안 제3조는 군복무 서울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는 “서울청년 상해보험”에 대해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 으로 정의하고 있음.
- 안 제4조와 안 제6조는 보험 계약 체결과 관련한 사항으로,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되,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또는 가입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해보험의 실시 후 나타난 만족도 및 성과에 대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당초 설계된 보험 사업을 수정·보완하는 등 사업 내용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서울특별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서울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서울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보험계약체결) 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p>
<p>제6조(평가) 시장은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또는 가입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p>

2) 가입대상(안 제5조)

- 안 제5조는 서울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을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에서 현역병, 상근예비역⁴⁾,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5조(가입대상) 서울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제도를 도입한 광역 지방자치단체⁵⁾는 경기도가 있는바, 가입대상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으며, 두 조례 모두 「병역법」에서 보충역으로 규정하는 대상인 사회복지요원 및 직업군인은 제외하고 있으며,
 - 이는 직업군인 등은 별도로 상해보험 가입 등이 제도화되어 중복적인 수혜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연번	지방자치단체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 관련 조례	주요 사업	2019년 예산액 (백만원)
1	서울시	「서울특별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대상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

4)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로, 현역병과 같이 기초군사교육(육군은 5주, 해군은 6주, 해병대는 7주)을 마친 후, 집에서 출·퇴근하며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임. 복무지는 집근처 군부대나 예비군 중대이고, 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과 동일함. 상근예비역은 군인 신분이며 계급은 육군 현역병과 동일하게 진급되고 복무기간이 끝나면 전역증을 받음.

5)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제도를 도입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 서산시(2019. 3. 1. 시행), 충청북도 증평군(2019. 3. 11. 시행), 강원도 정선군(2019. 4. 2. 시행), 충청남도 부여군(2019. 5. 15. 시행) 등이 있음.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사업내용: 상해보험 가입 사업방식: 민간위탁 가능	
2	경기도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사업내용: 상해보험 가입 사업방식: 민간위탁 가능	2,500

3) 사무의 위탁 등(안 제7조~안 제8조, 안 제 10조)

- 안 제7조는 서울청년 상해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나 관련 전문기관 등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p>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청년 상해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나 관련 전문기관 등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p> <p>제8조(준용) 서울청년 상해보험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p> <p>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정부부처, 자치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 동 사업의 집행구조를 고려해 볼 때,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는 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수행하게 되는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보험 계약 체결 등 상해보험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 보다 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이 과도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전문성과 비용 효율성 등을 위하여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바, 조례로 민간위탁의 수행 주체에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안 제10조는 시장은 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정부부처, 자치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 등은 일정부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군 지역사회복지⁶⁾”의 의미하는 바가 지나치게 추상적인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6)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복지정책으로, 국가의 공적부조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하여 지역의 독자적인 혁신과 특화 사업 등 지역사회중심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을 의미함(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기타(안 제9조, 안 제11조 및 부칙)

- 안 제9조는 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1조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문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부칙에서도 일부 문구(공보한 ⇒ 공포한)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정안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사지원팀장 : 박 회 숙

입법조사관 : 신 정 희

참고자료

1. 군인 사망보상금

사망의 유형	보상금 산정	보상액(2019)
1. 전사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	305,810천원
2. 특수직무 순직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	234,260천원
3. 위 1 및 2 외의 복무 중 공무를 수행했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	129,229천원

* 3. 의 사유로 사망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사망보상금을 산정

* 2019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300천원

2. 군인 장애보상금

구 분	보상금 산정	보상액(2019)
제1급에 해당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78	17,321천원
제2급에 해당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52	11,548천원
제3급에 해당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39	8,661천원
제4급에 해당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5,774천원

*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419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419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장애보상금을 산정